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. 4. 23 선고 2023가단108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(개명 전: C)

2. D

3. E

4. F

5. G

변 론 종 결 2024. 3. 19.

판 결 선 고 2024. 4. 2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1 “피고별 상속지분의 표시”에 관하여 별지2 “건물의 표시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1) .
2.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. 11. 1.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각 매년 금 30,000원의 비율2)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3 청구원인과 같다.

2. 피고 B(개명전 : C), E, G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3. 피고 D, F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배예선

별지

1) 공유물인 건물과 그 부지의 인도 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나 공유자는 각자 자신의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과 그 부지 전체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한다(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80다756 판결 등 참고).

2) 원고는 청구취지에 ‘매년 150,000원의 비율로’라고 기재하였으나, 청구원인의 기재상 피고들별로 30,000원씩을 구하고 있는것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기재한다(2023. 9. 27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참조).